

1. 관세의 확정방법

신고납부제도
(원 칙)

부과고지제도
(예 외)

- 신고납부란?
 -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확정하고,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으로 관세를 확정하는 것

2. 부과고지의 대상

- 1) 예외적인 시기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
- 2)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
- 3)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
- 4)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이나 별송품
- 5) 우편물(미화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)
- 6) 신고납부 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
- 7) 이사자의 이사물품
- 8)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

3. 납세액의 산출방법(1)

◆ 관 세

[종가세] 과세가격(외화가격 * 과세환율) * 관세율

[종량세] 수입물품의 수량 * 단위당 세액

◆ 개별소비세

[일반물품]

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 * 개별소비세율(5-20%)

[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]

{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} - 기준가격} X 개별소비세율(20%)

◆ 교통세

수입물량(휘발유 등) * 교통세율(630원/리터)

수입물량(경유 등) * 교통세율(454원/리터)

◆ 주 세

[주 류] 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 * 주세율(5-80%)

[酒 精] 수입 물량(kl) * 단위당 주세액(57,000원+가산금액)

4. 납세액의 산출방법(2)

◆ 교육세

[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것] 개별소비세액 * 교육세율(30%)
단 석유제품 부산물은 15%

[교통세에 부가되는 것] 교통세액 * 교육세율(15%)

[주세에 부가되는 것] 주세액 * 교육세율(10%) 단 주세율이
70%를 초과하는 주류는 30%

◆ 농어촌특별세

[관세 감면물품] 관세의 감면세액 * 농어촌특별세율(20%)

[개별소비세 과세물품] 개별소비세액 * 농어촌특별세율
(10%)

◆ 부가가치세

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교육세 +
교통세 + 농어촌특별세) * 부가가치세율

5. 관세의 납부기한

- ❑ 신고납부의 경우 :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
- ❑ 부과고지의 경우 :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- ❑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: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

- ❖ 예외
 - 월별납부제도의 적용 : 매 월말단위로 말일까지 일괄납부
 - 천재(天災), 지변(地變)이나 전쟁, 화재,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큰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로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: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
 - 분할납부 : 분할납부승인시 세관장이 납기를 정함
 - 환금특례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: 일괄납부기간(분기, 4월, 반기) 익월말까지가 납기

6. 가산금제도

- ❑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: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 세액외에 가산금을 추가 부과(제42조)
- ❖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액의 3% 상당을 추가 (1차 가산금)
- ❖ 최고 60개월까지 매 1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액의 1.2% 상당을 1차가산금에 추가(중가산금) : 따라서 최고 75%의 가산금까지 부과 가능
-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❑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, 우편물(정식 수입신고 대상은 제외)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7. 가산세제도

-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(세액 또는 과세가격의 5%~30%) 제42조
 - ❖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징수하는 경우
 - ❖ 재수출면세(감면세)처분으로 수입한 물품을 규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
 - ❖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❖ 과세대상인 여행자휴대품 또는 이사물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 - ❖ 즉시 반출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8. 납세신고사항의 수정

구 분	수정 시기	수정 주체	가산세(금)여부
정 정	관세납부전	납세의무자	없 음
보 정	납세후 6월내	납세의무자	당해 부족세액×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×10만분의13)
수정신고	보정기간 경과후	납세의무자	
경 정	보정기간 경과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납세자 청구 (과다납부) •세관장 인지 (부족납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오납 환급 •가산세 : (추가납부세액의10%) + (당해부족세액×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×10만분의1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정정 시 납세기한 : 당초의 납부기한 •보정/수정 시 납세기한 : 보정/수정 신청 다음날까지 			

8-1. 가산금과 가산세

구 분	부과 시기	수정 주체	가산세(금)여부
가산금	체납일부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체납관세 × 3%) +(경과 월 수 × 1.2%) •최장 60개월 초과 못함(체납처분)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체납관세 100만원 미만은 중가산 적용 않함`
가산세	수정/경정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추가납부세액의 10%) + (당해 부족세액×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×10만분의13)
	부당한 과소 신고에 의한 추징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당해 부족세액×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×10만분의 13)+(추가납부세액의 40%)
<p>법241조 : 보세구역장치기간(30일) 경과(법 241조) 과세가격의 100/2 범위내에서 가산세 징수</p> <p>령(248조) : 기한경과 20일/50일/80일 이내 및 이후 1000분의 5/10/15 및 20</p> <p>가산금은 500만원 초과금지</p>			

8-2. 결손처분

-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의무를 없애는 것
 - 시효결손 :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세의무 소멸
 - 불납결손 :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, 무재산, 행방불명,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
- * 불납결손 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점에서 징수권 소멸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분됨

8-3. 과오납금의 처분

-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. 이는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돌려줌
- 환급 : 신청에 의한 환급, 세관장 인지에 의한 환급
- 충당 : 환급 받을 자가 미납한 관세 등이 있을 경우 환급금으로 충당
- 양도 : 환급 받을 자는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
- 과다환급금 징수 :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
- 환급가산금 : 과오납부한 날로부터 환급/충당 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

9-1. 납부의무 소멸

- 납세의무의 실현에 의한 소멸 :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
- 납세의무 미실현 상태의 소멸
 - ✓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
 - ✓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
 - ✓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
- ❖ 소멸시효 vs 제척기간
 - ✓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.
 - ✓ 제척기간도 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. 그러나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름

9-2. 관세부과의 제척기간

- 원칙적으로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(부과할 수 있는 권한). 이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.

-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가 제척기간이 된다.
 -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받은 경우
 -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신고를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
- 특례 :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결정/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(1년) 그 결정/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
 - 이의/심사/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
 -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
 -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

10.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

- 관세징수권(징수할 수 있는 권한)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◆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(종전 3년)
- ◆ 수출물품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(종전 2년)

- 다음의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 - 납세고지
 - 경정처분
 - 납세독촉(납부최고를 포함한다)
 - 통고처분
 - 고 발
 -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소제기
 - 교부청구
 - 압 류

11. 납세담보의 종류

1. 금전
 2. 국채 또는 지방채
 3. 세관장 인정 유가증권
 4. 납세보증보험증권
 5. 토지
 6. 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되어 있는 건물, 시설재, 선박 등
 7.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
- 1호와 7호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함
 - 체납시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(잔액은 교부/공탁), 납세보증의 경우는 그 보증인에게 잔액 교부
 - 담보가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: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름